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

## 일부개정조례안

# 심사보고서

2024. 6. 27.

행정위원회

### 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24년 5월 31일

나. 발 의 자: 김지연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24년 6월 11일

라. 상정일자: 제253회 영등포구의회 제1차 정례회

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(2024. 6. 20.) 상정 의결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지연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,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·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주민참여예산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  
(안 제1조, 제3조~제5조, 제6조~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5조)
-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고일 수 연장(안 제6조)
-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성별·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(안 제10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강용철)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명시하고 있는 예산에 관한 주민의 참여를 “예산편성 과정”에서 “예산편성 등 예산과정”으로 개정하여 주민의 참여 폭을 넓히고자 발의된 것으로,

○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

- 개정안 전체에서 절차 중 “예산편성”에만 국한되어 있는 부분을 “예산과정”으로 변경하여 예산의 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등의 과정까지 확대함.
- 안 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에는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수립 공고기간을 “10일”에서 “15일”로 변경함.
- 안 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에서는 위원회 구성과 관련하여 성별·연령대별 인원을 고려함으로써 다양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함.

○ 검토 결과

- 본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에 근거하여 예산편성과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'11.7.18. 제정된 바 있으며, 동 조례에 따라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범위는 예산의 편성 과정까지임.
- 한편, 상위법인 「지방재정법」이 '18.3.27. 개정되어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집행 및 평가 등의 과정까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참여예산제도의 범위를 넓힌 바 있고, 이번 일부개정은 이러한 기초를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현재 서울시 6개 자치구가 자치법규 개정을 통해 이를 반영하여 시행 중임.
- 아울러, 위원회 구성은 성별·연령대 비율을 고려할 것을 명문화함으로써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보장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가 인정되며,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제5항에 따라 주민참여예산기구의 구성·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는바 상위법과의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#### 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김지연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347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: 2024. 5. .

발 의 자: 김지연, 우경란, 양송이  
유승용 의원(4인)

## 1. 제안이유

「지방재정법」 개정에 따라 주민참여예산에 주민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,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성별·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하여 주민참여예산 사업의 투명성과 주민 참여도를 제고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주민참여예산 참여 범위를 예산편성에서 예산과정으로 확대

(안 제1조, 제3조~제5조, 제6조~제8조, 제10조, 제11조, 제15조)

나.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 홈페이지 공고일 수 연장(안 제6조)

다. 주민참여예산위원회의 구성에 성별·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도록 규정(안 제10조)

## 3. 개정안: “별첨”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지방재정법」, 「지방자치법」

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다. 입법예고(2024. 5. 16.~ 5. 21.): 의견 없음

##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과정”을 “등 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3조 중 “시”를 “등 예산과정(이하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”으로, “예산편성에”를 “예산과정에”로 한다.

제4조 중 “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”를 “예산과정에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예산편성과 관련된”을 “예산과정에 대한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10일”을 “15일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8조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 중 “있어서”를 “있어서 성별·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”로 한다.

제11조제1호 및 같은 조 제4호 중 “예산편성”을 각각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제15조제1항 중 “예산편성”을 “예산과정”으로 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재정법」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예산편성 <u>과정</u>에 주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예산의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 <u>등 예산과정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3조(법령준수의무) 이 조례에 따라 예산편성 <u>시</u> 주민참여 절차·방법 등은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재정법」,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 <u>예산편성</u>에 관하여 규정된 법령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.</p>	<p>제3조(법령준수의무) ----- ----- <u>등 예산과정(이하 “예산과정”이라 한다)과 관련된</u> ----- ----- <u>예산과정에</u>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4조(구청장의 책무)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예산을 편성하는 단계</u>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와 주민참여 보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.</p>	<p>제4조(구청장의 책무) ----- ----- ----- <u>예산과정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주민의 권리) 주민은 누구나 이 조례가 정한 범위에서 구</p>	<p>제5조(주민의 권리) ----- -----</p>

의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① 구청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을 수립하여 10일 이상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.

②·③ (생략)

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해 설명회, 공청회, 토론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.

② (생략)

제8조(의견 제출) 예산편성과 관련된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주민은 제6조의 구청장이 수립한 주민참여예산운영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.

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① 구청장은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참

-- 예산과정에 대한 -----  
-----.

제6조(운영계획 수립 공고 및 적용범위) ① -----  
-----  
----- 15일 -----  
-----.

②·③ (현행과 같음)

제7조(의견수렴 절차 등) ① ----  
--- 예산과정-----  
-----  
-----  
-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의견 제출) 예산과정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제10조(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)

① ----- 예산과정-----  
-----  
-----  
-----

여예산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~ ④ (생략)

⑤ 구청장은 위원 구성에 있어서 사회적 약자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⑥ (생략)

제11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.

1. 예산편성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

2. 3. (생략)

4.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

5. 6. (생략)

제15조(분과위원회) ① 위원회는 예산편성에 관한 주민의 의견 수렴 등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② ~ ⑧ (생략)

-----  
-----.

② ~ ④ (현행과 같음)

⑤ ----- 있어서 성별·연령대별 비율을 고려하여 구성하고, -----.

⑥ (현행과 같음)

제11조(기능) -----  
-----.

1. 예산과정-----  
--

2. 3. (현행과 같음)

4. 예산과정-----  
-----

5. 6. (현행과 같음)

제15조(분과위원회) ① -----  
예산과정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② ~ ⑧ (현행과 같음)